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방안

| 일 시 | 2019. 12. 3.(화) 14:00~17: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 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진행 일정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 회	사 회 자
14:05~14:15	10'	인사 말씀	이소연(국가기록원장)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4:15~14:40	25'	주제발표 1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활용 방안	노영중 학예연구원(국가기록원)
14:40~15:05	25'	주제발표 2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	남상구 소장(동북아역사재단)
15:05~15:15	10'	휴 식	-
15:15~17:00	105'	종합 토론	좌장 : 김민영 교수(군산대학교) 토론 : 류준범 실장(국사편찬위원회) 허광무 연구위원(부평문화원) 한혜인 연구원(성균관대학교)
17:00	-	폐 회	사 회 자

|| 주제발표

- ▶ 1.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활용 방안 01
노영중 학예연구관(국가기록원)
- ▶ 2.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 23
남상구 소장(동북아역사재단)

|| 토론요지문

- ▶ 1.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 구축에 관한 간단한 의견 33
류준범 실장(국사편찬위원회)
- ▶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41
허광무 연구위원(부평문화원)
- ▶ 3. 강제동원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와 연구방향 47
한혜인 연구원(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 1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 · 활용 방안

노영종 학예연구관(국가기록원)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활용 방안

노영중(국가기록원)

머리말

-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경제적 제재를 취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음
- 강제동원은 일제가 그들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시킨 것을 말하며, 노동력 동원, 병력 동원, 성(性) 동원을 포함
 - 일제가 1939~45년 매년 수립한 ‘노무(국민)동원계획’ 안에 조선인 포함
- 2000년대 이후 강제동원 연구의 중심축이 국내로 옮겨졌으나, 강제동원 조선인의 정확한 전체 규모가 산출되지 못하였고, 강제동원의 강제성 등 학문적 성과를 더욱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독립기념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강제동원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DB를 구축하여 연구자 그룹에게는 학술 연구자료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록정보로 서비스해야 할 필요성 급증
- 본고는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의 강제동원 기록의 보존 현황과 DB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기록과 DB자료를 아우르는 통합DB 구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은 국가기록원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중심으로, DB 구축 현황은 국가기록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살펴
 - 통합 DB 구축방향 및 명부 구성항목과 DB 구조 확인을 통해 DB 정리 항목을 제시하고, DB 구축 추진일정과 활용 방안 설명

1.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1) 국가기록원

(1) 조선총독부문서

- 노무군 문서
 - 노동력 조사, 노동통제 법령, 남양군도 농업이민(약 1천 명) 등
- 지방행정군 문서
 - 조선총독, 정무총감, 도지사 유시(諭示) 및 회의자료 등에 포함
- 지자체 수집 문서
 - 예규철, 지침철 등에 관련 기록이 산발적으로 포함

(2) 강제동원자명부 : 총 164.9만 명(중복분 포함)

- 일본 정부 전달 명부 : 약 57.8만 명
 - 일제 강제동원자명부(544권, M/F 26롤, 약 48만 명) *일부 비공개
 - 군인·군속 공탁금명부(약 9.8만 명) *비공개
- 우리 정부 생산 명부 : 약 51.5만 명
 - 일정시 피징용자명부(65권, 약 23만 명)
 - 왜정시 피징용자명부(20권, 28.5만 명)
- 수집 명부 : 55.6만 명
 - 강제연행진상조사단 명부(81종 116책, 41만 명)
 - 조선인 포로 명부(2만매, 2.7천 명)
 - 故 김광렬 기증 명부(2,337권, 약 14만 명)
 - 명부록(1권, 419명)

(3) 총독부 행정기록 *부분공개(개인정보 제외)

- “국민징용령 위반”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
- “국외이송”, “영리유괴” 판결문 등 :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
- “육해군형법 위반” 판결문 등 : 일본군‘위안부’ 관련 당시 상황을 알려줌

(4) 대일민간청구권기록

- 청구권 신고
 - 법률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71. 3. 21. 시행, 1982. 12. 31. 폐지)
 - 신고 내용 :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신고
 - 신고 기간 :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 이내
- 보상금 지급
 - 법률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74. 12. 21. 시행, 1982. 12. 31. 폐지)
 - 보상금 지급기간 : 1975년 7월 1일~1977년 6월 30일 (2년)
 - 보상 내용 : 인명보상 / 재산보상
- 인명보상은 '피징용사망자' 1인 당 30만 원 지급
 - '피징용사망자'란 일본국에 강제적으로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군인, 군속, 노무자를 뜻함
 - 인명보상 현황 : 보상금 지급결정은 8,910명 / 보상금 지급은 : 8,552명
- 관련 기록물 : 55권
 - 대일민간청구권의 정책 및 법률 입안 기록 : 6권
 - 대장류 : 49권(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 19권, 보상금 지급 30권)

(5) 유골봉환기록

- 1971~76년 정부 차원에서 3차례 한국인 유골봉환이 이루어짐
 - 총 유골 2,329위의 봉환(육군 1,451, 해군 817, 기타 61)
- 관련 기록물 : 24권 (대통령기록물 1건, 문서류 19권, 대장류 4권)
 - 대통령기록물 : 1건(예비비 지출 재가 품의전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 보건사회부 : 8권(일본 후생성 보관 유골 2,329위의 봉환 경위, 위령제 거행, 유골 안치 과정)
 - 외무부 : 2권(한국인 유골명부)
 - 부산시 : 5권(유골명부, 향전금 수령자명단)
 - 제주도 : 1권(유골명부)
 - 전라남도 : 1권(전남지역 연고 유골 128위)
 - 목포시 : 2권(위령제 실시, 위령탑 건립 등)
 - 산청군 : 1권(유골명부)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행정기록(440,817권)
 - 피해조사서(227,140건) 심사서(121,978건), 지급서류(89,378건), 취하서류(1,420건)
 - 행정문서(358권), 회의자료(519권), 행정박물(24점)
- 시청각 기록 등(4,587권·점)
 - 구술기록, 해외 출장 동영상, 워크숍 동영상, 출장 사진, 회의 동영상, 전자도서, 사진자료, 용역보고서 등(3,533점)
 - 카세트테이프, 의료기록 사본, X-ray 필름 등(908점)
 - 발간도서(146권)

(7) 정신대 관련 기록

- 여성부 : 정신대 신고서, 정신대철, 정신대(1991~1997)
- 행정안전부 : 정신대 관계철, 정신대 보고철(1992~1993)
- 자료집, 보고서류
- 시청각자료 : 현지조사 녹음동영상, 접견·표창 및 시위 사진

2)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 강제동원자명부(약 1천 종)

- 노무자공탁명부, 노무자공탁서(도쿄법무국, 요코하마법무국 등)
- 기증수집 명부
 - 가와사키조선소행응징사명부, 남방트럭섬피징용자명단, 베이징포로수용소방명록, 사할린억류동포귀환희망자명부 등
- 사본수집 명부 등
 - 남양군도귀환자명부, 강화지역 군인군속 유수명부, 강화지역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명부, 태평양전쟁 한국인전몰자 유골명부(유텐지), 가이지마(貝島)탄광 징용자명부, 후생연금 2009년 12월 처리결과, 조선인사망자명부, 수형인명부, 중국연고자카드 등

(2) 일반문서(약 2,300여 종)

- 군작업정보급관계철, 해남경비부관계철, 진해해군병원전시일지 등
- 태평양전쟁종결에 의한 구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관계잡건(일본 외무성)

- 조세이(長生)탄광 노무관리장부, 조선인피폭자조사카드, 한국시베리아사포회명단 등
- 종군위안부 관계문서철, 방위연주소 소장 위안부 관련자료
- 징용출두명령서, 탈출징용자경고장, 징용해제증, 사망증명서, 사망징용자 유해발굴 통지서 등
- 보험증서, 보험영수증, 급여명세서, 징용고지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 편지, 메모, 수기, 판결자료 등
- 자료집, 일본출장자료 등

(3) 시청각 및 구술기록 및 스캐닝자료 등

- 사진(1,230) : 입소사진, 단체사진, 개인사진, 증빙자료 등
- 구술기록, 영상기록, 방송기록(642) 등
- 박물(81) : 각반, 깃발, 군복, 지폐, 목도장, 포로뱃지, 명찰 등

(4) 발간물, 도서 등 기타

- 재판서류, 논문(15), 단행본(46), 도서(4천 종) 등

2. 강제동원자명부 DB 구축 현황

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홈페이지)>

- DB 구축 연혁 : 2001~2016년
 - 일본 정부 전달분('01년), 왜정시 피징용자명부('02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수집 명부('05년), 일정시피징용자명부('16년)
- 대상량 : 105만 명
 - 일본 정부 전달분(48만명), 왜정시 피징용자명부(28.5만 명),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수집명부(5만명 *중복분 제외), 일정시피징용자명부(23만 명)
- 정리항목 *강제동원 사실 확인의 목적
 - 성명(한글), 출생연도, 본적지(도, 군), 동원지, 사망여부, 공탁금여부, 야스쿠니신사 합사여부, 명부명, 페이지번호

〈중앙연구기록관리시스템(CAMS)〉

- 강제동원자명부 컬렉션 구성
 - 검색어(4개) : 성명, 출생년도, 본적지, 동원지
 - 검색결과 : 성명(한글, 한자), 본적지, 출생년도, 동원지, 합사여부, 공탁금여부, 사망 여부, 쪽수, 명부명, 원문이미지
 - 기록물 철, 건 정보 : 기록물철(명부명 한글, 원어), 기록물건(세부명부명 한글, 원어)
- 기록물철, 기록물건 검색
 - 기록물철 : 관리번호, 기록물철 제목(한글명, 원어명), 생산기관, 수집국가, 분류체계, 보존기간, 등록건수, 쪽수, 생산연도, 건수, 서고위치, 인수일, 서고정보, 보존방법, 매체 여부, 디지털화 여부
 - 기록물건 : 목록관리번호, 세부내역 제목(한글명, 원어명), 분류체계, 문서번호, 쪽수, 서고정보, 공개여부, 매체여부, 원문 이미지

2)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 DB 구축 연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구축·활용 시스템

〈원문 시스템〉

- 기록물정보 : 대상정보명(2014 사할린 한인기록명부), 고유번호, 기록물 한글명, 건 한글명, 해당면수, 급여명세 등
- 상세정보 : 성명(창씨명)(한글), 생년월일, 본적지, 연행지, 합사여부, 공탁금여부, 사망 여부, 생산연도, 공개구분
- 이미지정보 : 해당면수, 해당페이지보기, 전체기본, 전체 Fancy

〈강제동원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 대상량 : 약 23만 명(신청 227,559명)

[피해신고서]

HOME / 공지사항 / 정보수정 / FAQ / 로그아웃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ver 3.0

실적조회 | 디로그 검색 | 원문자료검색

일기 | 표지출력 | 신고서 원문출력 | 접수번호 | 중국 선양,

중복처리
이승
취하

피해 신고서 (관리용)

현작업조직: 위원회, 진행: 완료, 최종수정일: 2012-04-03

신고인	성명 (한자)	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중국 길림성			
	전화번호(집)		핸드폰		
	피해자와 관계	예) 본인, 자, 조카			
피해자	성명 (한자)	전 ()	함씨명		
	생년 월일	1925 / 04 / 16	성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행방	
	당시 본적	조선			
	당시 주소	중국 길림성			
	신고 사유	<input type="checkbox"/> 동원중사망	일시	장소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	일시	장소	
		<input type="checkbox"/> 후유장애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내용 일제강점하 강제징병 피해신고			
강제동원 피해 상황					
동원년월일	19450806	예) 19420601	당시 직업	교원	
동원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군무원 <input type="checkbox"/> 노무자 <input type="checkbox"/> 위안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고인
피해자
피해조사
사실확인
의견서
심의조사
심의의결
결정통보

피해처리
인무목록
인무조사

위원회메뉴

- 피해신고신청
- 직권재조사
- 가족부작성
- 진상조사
- 피해처리
- 피해신고
- 피해조사
- 사실확인결과
- 의견서
- 심의조사
- 분과의결
- 심의의결
- 심의회의
- 결정통보
- 발송관리
- 자료조회&출력
- 보고서
- 통계
- 관리자

[피해조사 보고]

HOME / 공지사항 / 정보수령 / FAQ / 로그인

피해조사 | 디로그 검색 | 원문자료검색

표지출력 | 신고서 첨부출력 | 접수번호 | 중국

피해신고서 (관리용)

장항: 완료, 최종수정일: 2012-04-03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에) 본인,자,조카

() () ()

04 / 16 | 남 여 | 생년월일 사망 생환 양분

복도

생존유연

사망 일시 | 장소

일시 | 장소

내용

내용 일제강점하 강제징병 피해신고

강제동원 피해 상황

에)19420601 | 당시 직업 | 교원

군무원 노무자 귀안부 기타

국외 | 동원 기간 | 194506 ~ 194602 | (0) 년 (0) 개

에)194509, 1946년 봄 | 귀환 장소 |

6월 일제강점하 강제징병에 동원되어 |
되어 1946년 2월에 귀환

피해조사 보고

접수번호	중국	신고 접수일	2012/01/12				
인간	성명 (한자)	전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중국 길림성					
피해자	피해자와 관계	전화 번호	0433-				
	성명 (한자)	전 ()	강제명				
	생년 월일		생년여부				
	당시 연력	조선 합일복도					
당시 주소	중국 길림성						
피해조사 목록	구분	조사일	시간	조사자	소속	직급	작성일자
	조사 보고된 정보가 없습니다.						

100%

[사실확인 결과서]

접수번호 한국

2-04-03

139-

장소

장소

당시 직업

기타

~ 194602 (0 년 0 개)

귀환 장소

중복처리

미 승

취 하

신고인

피해자

피해조사

사실확인

의견서

심의조서

심의의결

결정정보

인우목록

인우조사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 Internet Explorer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확인 결과서

신고인	전 (주) Tel: <input type="text"/>			
피해자	전 (주) <input type="text"/>			
보충 내용 (요지)	저는 전 <input type="text"/> 씨와 <input type="text"/> 씨에서 함께 사업하던 동료입니다. 제가 전 <input type="text"/> 씨로부터 자신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에서 근무했고, 전쟁 중 <input type="text"/> 님의 피해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고 내용 (요지)	1945년 8월 6일 일제강점하 강제징병에 동원되어 <input type="text"/> 부대에 갔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1946년 2월 <input type="text"/>			
강제동원 피해내용	동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군무원 <input type="checkbox"/> 노무자 <input type="checkbox"/> 위안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원 일시	19450806		
	동원 지역	(국외) <input type="text"/> -기타(미상의 부대)		
	소속 및 담당업무	<input type="text"/>		
	귀환 연월	194602	귀환 수단	<input type="text"/>
	피해내용 및 일시 장소	<input type="checkbox"/> 동원중사망 <input type="checkbox"/> 동원으로인한장애 <input type="checkbox"/> 동원중행방불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 <input type="text"/> 장소: <input type="text"/>		
	유골 국내 봉환여부	<input type="checkbox"/> 봉환 <input type="checkbox"/> 미봉환 <input type="checkbox"/> 봉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중피해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참고인	<input type="text"/>			

위 전 의 으로, 리(법)상 기
상인 자는 호적(제적포함)을 폐기했다는 서류보 호적 관련 자료는 세출하

100%

[심의조서]

DI보고 검색 원문자료검색

시원본출력 접수번호 중국

서 (관리용)

작성일: 2012-04-03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자,조카

참서명

상조여부 사망 생존 합동

장소

장소

강제징병 피해신고

피해 상황

당시 직업 교원

위안부 기타

194506 ~ 194602 (0 년 0 개)

1946년 봉 귀관 장소 준준현

징병에 동원되어 소재 포병부

1946년 2월에 귀향

종목처리

미 승

취 하

신고인

피해자

피해조사

사실확인

의견서

심의조서

심의의결

결정정보

인우목록

인우조사

피해전상 관리시스템 - Internet Explorer

접수번호 중국

심 의 조 서 (군인·군무원 분야)

피해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피해자 <input type="radio"/> 각하 <input type="radio"/> 기각 <input type="radio"/> 피해판정불능		
인적사항	신고인명 (한자)	권 (순)	생년월일	1925/04/16
	피해자명 (한자)	권 (순)	유족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불해당
사실확인 피해내용	동원 유형	군인·	동원 일시	19450806 예)19420601
	소속 및 담당업무			
	기관 연월	194602	기관 수단	
	피해내용	<input type="checkbox"/> 동원중 사망 <input type="checkbox"/> 동원중로인한장애 <input type="checkbox"/> 동원중행방불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해일시	예)19430601	피해장소	
	다중피해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피해내용	동원 유형	(계급 직위)		
	동원 기간	1945 / 08 / 06 ~ 1946 / 02 /		
	동원 지역	(국외) 기타 이상의 부대		
	피해사항	물적	<input type="checkbox"/> 미봉금 <input type="checkbox"/> 공탁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후유장애 <input type="checkbox"/> 합동 피해사실이 인정되는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생존)	
	유골관련사항	<input type="checkbox"/> 봉관 <input type="checkbox"/> 미봉관 <input type="checkbox"/> 불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거보상내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심의의결서]

중복처리

이승취하

신고연

피해자

피해조사

사실확인

의견서

심의조서

심의의결

결정정보

인우목록

인우조사

사망 생존 행불

교원

602 (0 년 0 개

정준현

포병부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 Internet Explorer

심의의결서 (피해신고)

피해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피해자 <input type="radio"/> 각하 <input type="radio"/> 기각 <input type="radio"/> 피해판정불능		
피해자	정 (중 - 군인)	집수번호	중국
의안번호	(I 위원회)	결정여부	피해자
의결구분	정 은 1945. 8. 6.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소재 미상의 부대 소속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6. 2월경에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판정한다.		

말기

100%

[심의·결정통지서]

○ 디로그 검색 ○ 원문자료검색

시 **일본총독** 접수번호 **중국**

서 (관리용)

수정일: 2012-04-03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

인,자,조카

) 형제명 []

남 여 생존여부 사망 생존 행방

]

거주지

[] 장소 []

[] 장소 []

[]

하 강제징병 피해신고

피해 상황

[] 당시 직업 [] 교원

위안부 기타

194506 ~ 194602 (0 년 0 개

946년 **몰** 귀환 장소 **공천현**

[] [] 포명부

1946년 2월에 귀환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 Internet Explorer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당초접수건

신고인	성명(한자)	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중국 길림성()		
피해자와 관계		전화번호 []		
피해자	성명(한자)	전 ()	형제명(혹명)	[]
	생년월일	1925/04/16 (남)	생존 여부	
	당시 본적	조선 함경북도		
당시 주소		중국 길림성()		
심의의뢰	회의명	[]	의안 번호	[]
	의결 주문	전 은 1945.8.6.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소재 이상의 부대 소속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6.2월경에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의뢰	의결 구분	피해자		
	통보 내용	전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함.		

[] []

100%

3. 통합 DB구축 방향

1) 명부 세부항목

○ 남양군도 농업이민 명부(3권)

남양농업 이민명부	도명, 선출군명, 호주 또는 세대주 성명, 가족수, 비고
이주희망자 선정조서	본적, 현주소, 직업, 호주 또는 세대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열령, 노동능력을 가진 자의 수, 현재의 영농면적, 비고, 남녀별 인원수, 호주 또는 세대주의 성질소행·교육정도·자산의 정도·경력의 대요
이주자 여행증명서	본적, 현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양행 농업이민명부	도명, 세대주 성명, 주소, 가족인원(대인, 12세 미만, 6세 미만, 계)
이주자 연명부	본적(도), 군명, 주소, 세대주 성명, 관계, 가족성명, 연령
남양행 노동자명부	도별, 선출군명, 노동자(단신자, 가족지, 계), 가족(대인, 12세 미만, 6세 미만, 계), 총인원, 반장 성명, 비고, 원적, 현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령

○ 유수명부(114권)

유수 명부	부대명, 고입년월일, 전 소속 및 전입년월일, 본적지, 유수담당자(주소, 관계, 성명), 징집년, 임관년(공탁금 표시), 병역종, 관등, 등급, 봉급월액, 발령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유수택도 유무, 보수년월일, 공탁금번호, 야스쿠니합사 스탬프, 퇴직표시 및 퇴직일자, 해고표시 및 해고일자, 해용표시 및 해용일자, 전사표시 및 전사일자, 도망표시 및 도망일자, 행방불명 표시 및 일자, 스탬프(濟, 軍, 供, 留, 除, 死, 不, 本, 生見), 기타 표시(削除, 重複, 石井)
----------	--

○ 병적전시명부(67권)

병적 전시 명부	역종, 병종, 출신별, 동원전의 소속부대, 특업 및 특유의 기능, 본적지, 유수담당자의 주소 및 성명, 소속일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 형벌, 위계, 훈등공급, 관등급(일자, 관등급), 이력(일자별 세부사항) ※ 붙임 : 사실증명서, 현인증명서, 증명서, 이환증명서, 생사불명자조서 등
----------------	--

○ 부로명표(156권)

부로명표	포로번호, 기소날짜 및 장소, 지문(10개 손가락), 계급 및 부대,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지, 주소, 가족관계, 체포날짜, 체포장소, 체포부대, 키, 체중, 눈색깔, 피부색, 머리색, 외모상 특징, 친척 이름, 나이, 직업 및 교육, 가능언어, 결혼여부, 종교
------	--

○ 병상일지(30권)

병상일지	입원번호, 병명, 조제의관, 원적, 우수담당자(관계, 주소, 성명), 부대명, 관등급, 성명, 원직특업, 상이질병등차, 출생일자, 발병, 초진, 입원, 퇴원, 전귀, 치료일수, 혈족적 관계, 기왕증, 원인 경과, 현증, 치료상황 ※ 붙임 : 사실증명서, 현인증명서, 검노성적표, 혈구계산표 등
------	--

○ 피징용사망자연명부(10권)

피징용사망자연명부	일련번호, 계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사망구분, 사망사유(전사/전병사/병사), 본적지, 친권자(관계, 성명, 주소)
-----------	--

○ 조선인노동자조사결과(15권)

조선인노동자조사결과	동원지(기업명, 주소), 입소경로별, 성명, 생년월일, 본적, 입소년월일, 퇴소년월일, 퇴소사유, 미불금(종별, 금액), 퇴직시의 대우, 후생연금보험급부 濟未濟, 적요
------------	---

○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계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계	피보험자증의 기재, 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노동자연금보험 피보험자의 포장(褒帳)의 기호번호, 피보험자증의 번호, 성명, 표준보수등급, 자격상실년월일, 자격상실원인, 자격취득의 월에서의 자격상실에 있어서는 자격취득의 날, 비교, 기타항목(控)
---------------	---

○ 군인군속공탁금명부

군인군속공탁금명부	공탁서(공탁번호,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소속과 이름, 공탁금액, 공탁원인, 공탁년월일, 공탁처, 공탁내역), 공탁명세서(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위탁인의 번호, 국적, 성명, 공탁내역, 공탁액, 비교)
-----------	---

○ 조선인 포로명부(2만 매)

조선인 포로 명부	성명, 출생연도 및 지역, 군소집 전 주소, 국적, 소속 당, 종교, 교육, 직업, 동원(지원) 일자, 병종, 복무부대, 계급, 직위, 항복 여부, 체포일자 및 장소, 이송등록 및 일자(사망 일자 및 사유, 송환일자 및 사유 등)
-----------	--

○ 김광렬 기증 기록(2,337권)

건강보험대장	소속, 번호, 표준임금, 등급, 성명, 생년월일, 자격취득, 자격상실
근로자명부	직명, 성명, 생년월일, 원적, 해고연도, 해고이유, 광부번호, 소개인
공상원부	직명, 성명, 부상일시, 부상장소, 부상원인, 광부번호, 노무계원
유골예각(帳)	성명, 작업장, 원적, 사망일
화장인가원부	직명, 성명, 본적, 사망일시, 사망장소, 광부번호
과거장	성명, 본적, 유골안치일

○ 유골봉환 기록(24권)

유골 봉환자 명단	<제2차 세계대전 중 전몰한국인 유족에 대한 향전금지급명세서> : 번호, 전몰자(전몰자 번호, 성명, 창씨명), 유가족(성명, 성별, 연령, 현주소, 관계), 수령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
유골 명부	번호, 성명, 창씨명, 관등, 본적지, 유족(성명, 창씨명, 관계, 성별), 구분,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구분, 한국측 명부 항과 행

○ 대일민간청구권 기록(55권)

신고자 명부	관리번호, 접수번호, 신고일자, 신고내용(신고인 성명, 주소), 사망자(성명, 본적), 결정사항(수리금액, 기부금액, 기부사유)
보상금지급 결정대장	관리번호, 접수번호, 신고인(성명, 주소, 신고금액), 수리금액, 보상금액, 현금, 증권, 지급은행, 교부일자
이의신청결과 (보상금 지급결정분)	일련번호, 관리번호, 접수번호, 신고내용(성명, 주소, 대상, 신고금액), 당초 보상금 지급결정(수리금액, 보상금액), 이의신청 사후 보상금 지급결정(수리금액, 보상금액, 현금, 증권), 지급은행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 기록

조사 기록	<p>[조사기록] : 분류번호, 접수번호, 피해자(성명(한자), 생년월일, 창씨명, 당시 주소), 신고자(성명, 주거, 피해자와 관계), 강제동원 피해상황(동원년월일, 동원유형, 피해내용, 동원지역, 귀환연도, 귀환수단), 조사담당(기초조사, 보강조사), 비교, 첨부문서(<신고서>, 제적부, 신분증 사본, 증빙기록, <피해신고 사실확인 결과서>, <심의조서>, <심의 결정통지서>)</p> <p><피해신고서> : 접수번호,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 관계, 전화번호), 피해자(성명, 창씨명, 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당시 본적, 당시 주소, 신고사유(사망/행방 불명/후유장애/기타), 신고사유별 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동원년월일, 당시 직업, 동원유형, 피동원지역, 동원기간, 귀환연도, 귀환장소, 피해내용, 과거보상내역)</p> <p><피해신고 사실확인 결과서> : 접수번호,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피해자(성명, 창씨명, 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당시 본적, 당시 주소), 보증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내용), 신고내용, 강제동원 피해내용(동원유형, 동원 일시, 동원지역, 소속 및 담당업무, 귀환연월, 귀환수단, 피해내용 및 일시 장소, 유골 국내 봉환 여부, 다중 피해여부), 참고인, 확인사항 등, 호적등재, 확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조사자 및 확인자의 소속·직급·성명</p> <p><심의조서> : 문서등록번호, 접수번호, 인적사항(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고인의 성명 및 유족해당 여부), 피해내용(동원유형, 동원기간, 동원지역, 피해사항, 유골 관련 사항, 과거 보상내역, 위인정 구비서류, 조사결과(특이사항), 종합의견), 작성자·확인자 성명 및 직급</p> <p><심의 결정통지서> :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피해자(성명, 창씨명, 출생년월일, 성별, 당시 본적, 당시 주소, 심의 결정 내용, 위원회 의결(안건 번호, 일자)</p>
심사 기록	<p>[위로금 등 지급신청 심사서] (<지급신청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인감증명서>, <유족 관계 사실확인 조사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명부 사본>, <심의 결정·통지서>)</p> <p><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미수금 피해자(성명, 창씨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현재 생존여부), 피해내용(강제동원된 일시, 강제동원된 지역, 강제동원 유형, 미수 금액, 공탁번호), 피해증명방법(강제동원 여부, 미수금 피해 관련), 유족현황(피해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p> <p><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p> <p><유족관계 사실확인 조사서> : 인적사항(희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유족현황(유족순위, 희생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생존여부), 신상규명위원회 피해결정(동원지역, 피해내용), 특이사항, 조사자·확인자의 직급 및 성명</p> <p><심의 결정통지서> :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피해자(성명, 창씨명, 출생년월일, 성별, 당시 본적, 당시 주소, 심의 결정 내용, 위원회 의결(안건 번호, 일자)</p> <p><심의조서> : 문서등록번호, 접수번호, 인적사항(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고인의 성명 및 유족해당 여부), 피해내용(동원유형, 동원기간, 동원지역, 피해사항, 유골 관련 사항, 과거 보상내역, 위인정 구비서류, 조사결과(특이사항), 종합의견), 작성자·확인자 성명 및 직급</p> <p><심의의결서> : 피해여부, 피해자(성명, 유형), 접수번호, 의안번호, 결정여부, 의결주문</p> <p><본회의 지급결정서> : 접수번호, 피해자(성명, 생년월일, 상정일, 의안번호, 결정사항</p>
지급 서류	<p>[지급청구서] : 접수번호, 의안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생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구비서류(<지급결정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p> <p><지급결정서> : 접수번호, 의안번호,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피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결정내용(인정여부, 미수금 인정금액, 지원금액), 유족별 지급액(유족성명, 지급액), 결정이유</p>

2) 국내외 사례 검토

(1) TNA Census records

- 1841~1911년 잉글랜드, 웨일즈, 채널(Channel) 제도, 맨(Man)섬, 선박, 영국 육군 등을 포함한 인구조사(10년 단위) 콘텐츠
- 검색
 - 인명검색(성, 이름, 출생지, 거주지, 키워드, 성별 등)
 - 주소검색(도시명, 거리명 등)
 - ※ 인구조사 연도에 따라 검색 혼용
- 제공 정보
 - 성, 이름, 주소, 연령, 성별, 직업, 세대와의 관계, 결혼여부, 계급, 출생지
 - 고용된 산업, 고용기관, 고용주, 결혼한 횟수, 자녀수, 사망자수, 국적
 - 관련 이미지 : 표지, 주소, 요약정보 등과 함께 원문 이미지 제공
 - ※ 개인의 기록은 100년 동안(또는 사망 증명 시까지) 비공개

(2)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 2016년부터 3개년 동안 기초자료 21,407건(문서건수 8,915건)의 정보를 추출하여 총 2,646건의 사건정보로 정리
- 검색
 - 사건정보, 탄압정보, 독립운동/동향정보로 구성
 - 검색어 : 날짜, 행정구역/ 사건명, 시위장소, 사건개요/세부장소, 인명, 내용 등/ 기본유형, 시간, 행동양상, 탄압양상, 운동매체, 운동주체
- 제공 정보
 - 사건일시, 장소, 시간, 행동양상, 탄압양상, 운동매체, 운동주체, 개요, 시위 세부 장소(지도 포함), 비고
 - 출처정보, 연관사건, 관련인물, 탄압기구
 - 부가정보 : 행정구역, 탄압기구(757건), 세부장소(6,385건), 출처자료(21,434건), 인물 정보(8,006건)

3) 통합DB 구축 검토

(1) 기본 방향

- 국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명부 전체를 망라하는 DB 구축
- DB 자료와 원본 이미지를 연계한 아카이브형 DB 구축
- 강제동원 연구(통계자료)에 활용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 반영
 - 동원 이전~동원 과정~해방 이후 등 전 과정 재구성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별 피해현황 등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 개인별 동원~사망 등 인생경로를 추적, 개인의 일대기(一代記)

(2) DB 구축 설계

- 기록물 관련 정보 : 수집이력, 명부 관련 정보 등

〈수집이력〉 국가 - 기관, 단체, 개인 / 수집년도

〈명부별 분류체계〉

- 명부군 : 일제강제동원자명부('91~'93년 일본 정부 전달 명부)
- 명부 시리즈 : 유수명부, 병적전시명부, 부로명표, ...
- 개별 명부명 :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
- 세부명부명 : 복지특경제6경비대대 갑1479, ...
- 세부항목 : 성명 / 본적지 / 출생연도 / 동원지, ...

〈개별명부〉 : 명부명(한글, 원어), 생산기관, 생산년도, 보존장소, 원본여부, 기록물형태, 수집국가, 수집기관, 수집년도, 세부명부 건수, 쪽수

〈세부명부〉 : 명부명(한글, 원어), 건번호, 공개여부, 쪽수, 원문 이미지

- 개인정보 : 성명, 성별, 본적, 주소, 출생일자, 직업, 학력, 경제력, 가족 등

〈성명〉(한글, 한자,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 이명1, 이명2, ...

〈본적지〉(도/부군/읍면/동리/번지), 본적지1, 본적지2, ...

〈주소지〉(도/부군/읍면/동리/번지), 주소지1, 주소지2, ...

〈성별〉(남/녀)

〈출생일자〉(YYYY-MM-DD) 〈연령〉(동원 당시)

〈직업〉, 〈학력〉, 〈재산〉(논, 밭), 〈성향〉,

〈가족〉(결혼여부, 가족수, 자녀수)

- 가족1(성명, 관계, 당시 연령, 본적지), 가족2, 가족3, ...

○ 동원 관련 정보 : 동원구분, 동원방식, 동원일자, 동원기간, 동원지 등

〈동원구분〉 : 노동력동원, 병력동원, 성동원
 〈동원방식〉 : 강제모집, 관주도, 징용,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기타
 〈동원일자〉(YYYY-MM-DD)
 〈동원기간〉
 〈동원지〉(지역 - 주소 - 회사명(부대명) - 세부회사명(세부부대명))
 - 지역: 일본, 중국, 만주, 조선, 남양군도, 동남아시아, 하와이, 사할린, 기타
 - 주소 ※ 행정구역별로 구분(시·도 / 시·군·부·구 / 읍·면·리·동 / 번지)
 - 회사명(회사명 1, 회사명 2, 회사명 3, ...)
 세부회사명 1, 세부회사명 2, 세부회사명 3, ...
 - 부대명(부대명 1, 부대명 2, 부대명 3, ...)
 세부부대명 1, 세부부대명 2, 세부부대명 3, ...

○ 노동 관련 정보(노동환경, 노동조건 등) : 담당업무, 임금, 노동시간, 숙소, 사고, 부상/사망, 사망, 퇴소, 저항 등

〈담당업무〉
 〈임금〉(지급여부, 액수 등)
 〈노동시간〉(노동방식,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
 〈숙소〉(요명 등)
 〈사고〉(사고명,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이유, 특이사항)
 〈부상/사망〉(부상/사망여부, 부상/사망일, 장소, 이유, 사유)
 〈퇴소〉(퇴소일자, 퇴소사유, 특이사항)
 〈저항〉(분류, 일자, 사유, 인원, 결과 등)
 ※ 군인·군속의 경우 소속부대, 부대편입일, 병종, 계급, 직위 등 추가

○ 해방이후 정보 : 귀국, 공탁금, 합사, 위로금, 유골봉환, 재판 등

〈귀국〉(귀국일자, 귀환지, 귀국경로)
 〈공탁금〉(공탁금 번호, 공탁금액, 공탁법원, 특이사항)
 〈야스쿠니신사〉(합사일자, 특이사항)
 〈유골봉환〉(유해 봉환일, 봉환장소, 신청자, 수령자)
 〈위로금〉(지급액, 지급일, 지급근거, 신청자, 수령자(성명, 주소, 관계 등))
 〈재판〉(판결국가, 심급, 판결법원, 판결번호, 소명, 회사명, 결과)

(3) DB 구축 계획 및 활용 방안

- 통합DB 구축('20 ~ '23년, 4개년)
 - '20년 : 시스템 설계 및 시범 구축(유수명부 등)
 - '21년 ~ '23년 : 본격적 추진
 - ※ 학계·학회 등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민관학 연계)
- 명부 수집 및 디지털화
 - 명부의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수집 병행
 - ※ 국내는 물론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국외 소장 명부 적극 수집
 - 명부 전량을 스캐닝(디지털화)
- 명부 조사·분석 등 연구 지원사업 추진
 - 명부 조사·분석 : 2개 팀(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 매년 DB자료 및 기록을 활용한 연구 지원사업(공동연구) 추진
 - ※ 연구자료로 적극 제공 및 지원
- 웹 서비스 구축('22 ~ '23년)
 - 연구자용 웹 서비스 구축·보완
 - 일반 국민 대상 웹 서비스 구축
- 심포지엄(국내 2, 국제 1)
 - 매년 DB 구축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심포지엄 개최
 -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특별 기획전시 및 자료집 발간
 -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특별 기획전시 개최
 - DB 결과 공유 및 중요 기록을 안내·설명하는 자료집 발간

주제발표 2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

남상구 소장(동북아역사재단)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

남 상 구(동북아역사재단)

1. 기록으로 구성하는 개인의 강제동원 피해실태

1) 유족이 찾은 아버지 기록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록은 연구자에게는 강제동원 피해의 전체상과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임.
- 유족에게는 동원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임. 하지만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 의해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의 행적을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음.

“사망기록을 놓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삶입니다. 어머니는 1997년에 일흔 여섯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해 전ैया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아셨습니다. 1945년 6월에, 아니 단 몇 년 뒤에라도 일본이 아버지의 전사소식을 알렸다면, 어머니는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지닌 채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어머니가 친할머니로부터 받아야 했던 그 수모도, 제가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아버지가 떠난 언덕길에 주저앉아 소리도 없이 토해내던 서러운 울음도 없었을 것입니다.”¹⁾

- 결국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낸 것은 유족 개인의 노력이었음²⁾.

1) 이희자, 「내가 '야스쿠니 소송'을 하는 이유」 (남상구 편, 『식민 청산과 야스쿠니』, 동북아역사재단, 2019), 253~254쪽.

2) 이희자, 「아버지 죽음의 흔적을 찾아서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기록 찾기 여정」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내일을 여는 역사 67』, 2017)

- 이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유족은 아무런 행적도 알지 못한 채 지냈다는 것을 의미함.
- 유족 이희자 씨 사례

	한국 정부	유족(이희자)
1971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 '피징용사망자연명부'를 입수 -사망 연월일, 장소 등이 기재됨	
1992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서 아버지 기록 확인
1993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 '유수명부', '병적전시명부', '병상일지' 등을 입수	
1996		'유수명부'에서 아버지 기록 확인 -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실, 공탁번호 (공42524) 확인
1999		후생성을 통해 공탁금 내역 확인 - 도쿄 법무국에 미지급 급여 1,480엔 공탁 (1953.6.1.)
2004		야스쿠니신사에서 합사 사실 확인 회신을 받음
200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입수	
2013		'병적전시명부'에서 아버지 기록 확인

2) 강제동원 피해자 기록과 피해실태(이사연 사례)

- o 이사현 관련 기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록(명부)	기재 내용
피징용사망자연명부 (*자료1)	사망자: 계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구분 (전사, 전상사 등), 사망 사유, 본적지 친권자: 성명, 관계, 주소
유수명부 (*자료2)	당사자: 부대편입 연월일, 전 소속부대,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본적, 공탁금 번호,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 가족(대표): 성명, 관계, 주소
병적전시명부(육군전시명부) (*자료3)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역종, 병종, 전 소속부대, 관등급, 약력 가족(대표): 성명, 관계, 주소
제신조사 회답(야스쿠니신사) (*자료4)	계급, 소속부대, 사망 연월일, 사망 구분(전상사), 사망 장소, 본적지, 유족, 합사연월일

- 상기 기록(명부)를 토대로 피해자 이사현의 피해실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성명: 이사현(이원사연)
 - 생년월일: 1921. 1. 12.
 - 본적지: 강화도
 - 주소: 강화도
 - 동원
 - 1944년 2월 15일, 징용령에 의해 치중병 제49연대에 징용됨(육군 군속)
 - 2월 15일, 특설건축근무 제101중대에 편입됨(2월 19일 동원 완결)
 - 전쟁피해
 - 3월 5일, 용산역을 출발하여 중지(中支, 중국 중부)로 파견됨
 - 3월 6일, 조선 국경 통과
 - 3월 8일, 산하이관(山海關) 통과
 - 3월 11일, 난징 도착
 - 3월 17일, 난징 출발
 - 3월 20일, 한커우 도착(이후 중국 중부에서 근무)
 - 1945년 5월 19일, 중대장 데라우치 중위 지휘 아래 광서성에 있는 의산경 부대 제1야전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유주 병참병원으로 후송 중에 광서성 유강현 육도향 서쪽 약 1미터 북쪽 고지에서 경기관총을 든 수십 명 적의 습격을 받아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부상을 당함
 - 5월 21일, 오른쪽 종아리 총상에 의해 유주 183병참병원 양삭환자요양소에 입원
 - 6월 8일, 전현 제181병참병원으로 이송
 - 6월 9일, 파상풍이 함께 발병
 - 6월 11일, 오른쪽 종아리 총상(정강이뼈와 종아리뼈의 복합골절)과 파상풍으로 전상사(戰傷死)
 - 공탁
 - 1953년 6월 1일, 도쿄 법무국에 미지급 급여 1,480엔이 공탁됨(공탁번호 공42524)
 -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 1959년 4월 6일,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됨
- 이사현의 사례와 같이 상세한 경우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강제동원 기록물을 통해 동원에서 피해실태까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자료 1. 피징용사망자연명부

被徵用死亡者連名簿

(舊日本陸軍在籍)

京 畿 道 941名
江 原 道 419名

財 務 部

0010

階級	姓名(生年月日)	所屬	死亡年月日	死亡場所	死亡原因	本籍地	關係	姓名	住所
97 雇員	李原恩連 (大10. 1. 12)	特選勤 昭 101中	20. 6. 11	山西省全保 180英站病院	戰傷死	江華郡松海面 率丁里	父	李原三封	本仁同以
98 雇員	松山耀彦 (大3. 8. 21)	同上 昭	20. 6. 19	同上	戰死 未詳	開州郡骨却面 排也里井村	妻	松山慶蓮	同上
99 雇員	三山基千 (明44. 9. 25)	同上 昭	20. 6. 19	同上	同上 回時燃	總山郡中面 合木里 209	妻父	三山敏煥	同上

자료 2. 유수명부

留守名簿

留守名簿

94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李原恩連	松山耀彦	三山基千
父 李原三封	妻 松山慶蓮	妻父 三山敏煥
昭 101中	昭	昭
20. 6. 11	20. 6. 19	20. 6. 19
山西省全保 180英站病院	同上	同上
戰傷死	戰死 未詳	同上 回時燃
江華郡松海面 率丁里	開州郡骨却面 排也里井村	總山郡中面 合木里 209
父	妻	妻父
李原三封	松山慶蓮	三山敏煥
昭	昭	昭
20. 6. 11	20. 6. 19	20. 6. 19
山西省全保 180英站病院	同上	同上
戰傷死	戰死 未詳	同上 回時燃
江華郡松海面 率丁里	開州郡骨却面 排也里井村	總山郡中面 合木里 209
父	妻	妻父
李原三封	松山慶蓮	三山敏煥

2. 강제동원 기록 서비스 방안

1) 적극적인 정보 공개

- 유족들에게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피징용사망자연명부」 등 기록물에 사망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유족회 관련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유족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유족도 있음.
 - 피해 사실 특히 사망 정보를 알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자에게는 국가기록원 등이 소장한 강제동원 명부의 전면 공개를 통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국가기록원이나 강제동원 위원회 연구자, 유족회 관계자 등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구가 제한됨.
 -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부 열람 및 연구 자료로 제공 필요
 - 명부에 대해서는 작성경위 등 상세한 해제 필요.
 - ※ 강제동원위원회가 수집한 명부 해제는 아래 참고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강제동원명부 해제집 1』, 2009,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강제동원명부 해제집 2』, 2013

2) 강제동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DB화 추진

- 명부를 통해 연구가 가능한 부분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부에 기재된 내용은 명부에 따라 천차만별임.
 - 강제동원 실태 전반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며 구체적인 동원지(사업장)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음.
 - 하지만 명부만으로 밝힐 수 있는 사실에는 한계가 있음. 명부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자료 5 참조).
 - 각 명부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 연구가 필요
- 현재까지 수집된 모든 명부(사본)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우선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수집(공유)
- 중복 확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수집한 명부 현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보면, 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1,413,470명(중복 가능)
- 강제동원 연구자와 기록 관리자가 함께 DB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 동원지, 동원시기, 귀환시기 등을 교차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
 - 명부에 기재된 항목 중 연구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입력
 - ※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작성한 엑셀에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포함됨.
- 강제동원위원회 연구 성과 계승

3) 기록과 추도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카드 만들기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별 카드 작성
 - 유족이 제공하는 사진 등 개인 자료도 추가
- 사망자 기록을 공적인 추도와 연계시켜 활용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위패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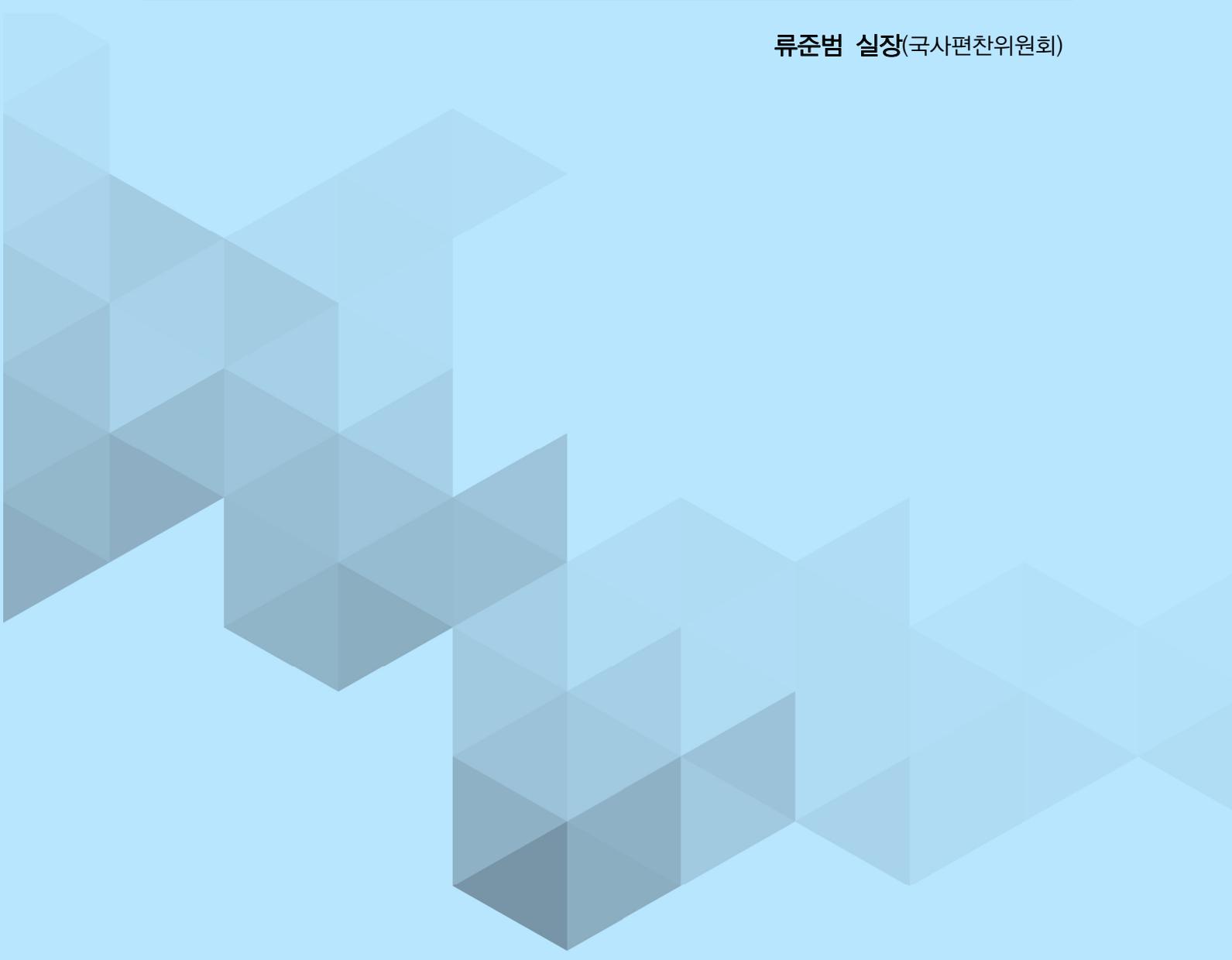
자료 5. 강제동원 명부를 활용한 연구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강제동원명부 해제집1』, 2009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편 『강제동원명부 해제집2』, 2013
-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 1): 이름만 남은 절규』, 선인, 2011
-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 2): 제국의 끝자락까지』, 선인, 2012
- 노영중 「일제하 강제연행자 현황에 대한 검토 :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강제연행자명부를 중심으로」 (『기록보존』 16, 2003)
- 김영미 「일제말기(1938~1945) 강원지역 군인동원에 대한 연구 : 동원의 사례와 실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 김진영 「일제 말 강화군에 대한 인력동원의 실태와 추이(1938-45) :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강제연행자 명부'를 중심으로」 2008(석사학위 논문)
-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연행기 조선인 · 명부 조사 현황과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
- 모리야 요시히코 「기업 · 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
- 정혜경 「국내 소장 · 전시체제기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 · 명부자료의 실태 및 활용 방안」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
- 정혜경 「전시체제기 · 일본 본토 조선인 · 노무자의 "전환배치(轉換配置)"-광산 명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7, 2009)
- 강정숙 「제2차세계대전기 ·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 편입에 관한 연구-유수명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0, 2011)
- 심재욱 「전시체제기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지역 동원현황-[구일본해군 조선인 군속 관련 자료](2009)의 미시적 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24, 2013)
- 노영중 「대전지역 강제연행 관련 기록물 현황」 (『대전문화』 24, 2015)
- 김영환 「『남양군도귀환자명부』를 통해 본 해방 직후 조선인의 남양군도 재류현황」 (『한국근현대사연구』 85, 2018)
- 노영중 「일제 말기 충남지역 노동력 강제동원과 거부투쟁」, 2019(박사학위 논문)
- 심재욱 「『육군운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운수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33, 2017)

토론요지문 1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 구축에 관한 간단한 의견

류준범 실장(국사편찬위원회)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 구축에 관한 간단한 의견

류 준 범(국사편찬위원회)

이 글은, 이번 포럼의 발표자 노영종 선생님, 남상구 선생님의 발표에 기반하여 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1.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 제작의 목적

일제의 한국인 강제동원 관련 DB를 제작하는 목적은, 두 분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찾아온 과거를 극복하여 명부 DB 등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별 피해 현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수많은 명부 상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통합하여 강제동원의 규모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래에는 이상의 기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를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나마 몇 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2.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의 활용 목적과 기능 요건

1) 1차적 대상 범위

두 분의 발표문에도 잘 정리되어 있고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동위’)의 강제동원명부해제집 등에도 소개되어 있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류 자료가 DB 제작의 1차적 대상 범위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명부류 자료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DB로 제작

되어야 이후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명부류 자료의 사료로서의 정확성 문제가 떠오릅니다. 일단 강동위의 ‘위인정’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국가기록원 등에서 수집된 자료까지 포함하여야 하겠지요.

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굳이 문서로 된 각종 명부를 디지털 형태의 DB로 만드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빠르게,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접근’은 각 명부의 건별 정보에 대한 접근과 아울러 연도별 동원 현황, 출신·주소지 현황, 강제동원지 현황 등 종합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3) 모든 역사 자료 DB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DB는 원자료 의존적입니다. 자료의 성격과 정보 형태에 따라 DB의 구성이 결정됩니다. 특히 명부 자료에 나오는 가능한 모든 정보는 DB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는, 정보의 신속하며 체계적인 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또한 그 정보가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① 문자 표기는 일단 원문 그대로여야 할 것이며 또한 명부의 원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저본 문서의 디지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명부 자체의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부 해제와 연동하여 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제동원명부해제집 등 기존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50년대에 만들어진 왜정시피징용자명부를 강동위에서 검증하여 정비한 ‘검증-왜정시피징용자명부’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이 자료의 경우 DB에 들어갈 자료는 후자, 즉 강동위 검증 명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DB에서 자료의 해설과 검증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DB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애로를 겪겠지요. 마찬가지로 여타 많은 명부들도 제작 경위, 입수 경위 및 명부에 서술된 각 요소들의 실제 의미 등에 대한 해설이 DB에서 접근 가능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 제작의 첫 단계는 현재 DB 형태로 정리된 자료들, 즉 국가기록원 제공 강제동원 명부 DB와 강동위에서 업무용으로 제작하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관리 중인 명부 DB를 정비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DB화 되지 않은 명부들을 차례로 추가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5) DB 기본 구성과 제작 방식

명부 자료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개별 요소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름, 나이, 본적지,

공탁금 여부 등등이 그것인데 이 요소들은 명부마다 모두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정보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요소들이 공통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 명부의 요소들은 누락 없이 전체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부의 각 요소는, 말하자면 DB 테이블의 칼럼들이고 메타데이터 셋의 요소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모든 명부의 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면서 공통 요소들을 추릴 필요가 있는데 시작 시점에서 슈퍼 셋 형태의 메타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명부들이 조사되어 있고 강동위의 경험도 쌓여 있으며 각종 연구 성과도 나와 있으므로 명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유형별 통합 셋이 만들어집니다. 유형별 통합 셋에는 해당 유형의 명부 요소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통 요소들을 추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겠지요. 이 정도면 1차 DB 설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유형별 통합 셋을 검토하여 일종의 슈퍼 셋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명부 통합 DB라고 해서 전체 단일 통합 테이블을 설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핵심은 공통 요소 기반 정보 접근 기능, 즉 검색 기능의 제공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통합 셋은 슈퍼 셋 형태가 아니라 공통 요소 메타데이터 셋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를 만들려면, ① 명부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② 또한 통합 DB 활용의 기능 요건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원자료에 나오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DB 제작 단계에서 작업하려고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예컨대, 강제동원 방식을 ‘모집 - 회유, 모집 - 강제·사기, 관알선 - 강제배당, 징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DB 제작 단계에서 위의 분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명부 자료에 나오는 정보에 빠짐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DB를 제작하면 위와 같은 연구적 분류 정보 등은 이미 구축된 명부 DB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야 작업이 효율적이며 작업 결과도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최종 연구적 성격이 강한 작업성과는, 굳이 DB 제작 단계에서 고려하기보다 DB 구축 후 활용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6) 데이터 통제 작업

앞서 문자는 원자료 그대로가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개가 한자 형태로 입력될

것이고 한자의 한글 음가에 관한 사전 데이터는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니 한글 검색으로 원하는 한자 정보를 찾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두음법칙 등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도 역사 자료 정보화의 경험에서 대부분 해결 상태입니다.

① 先통제

DB 제작 단계에서 앞서 데이터 통제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짜 정보입니다. 원자료에 ‘昭和 19年’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입력할 경우 날짜 구간 검색에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 이미 예상이 가능하니까요 - 아마도 YYYY-MM-DD 형태의 날짜 스킴으로 정비되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원 자료의 표기 그대로 입력 후 날짜 정보에 대한 기본 칼럼을 추가하여 해당 칼럼에 YYYY-MM-DD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국내 행정구역도 미리 통제되어야 할 데이터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미리 코드화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적지 정보처럼 1910~20년대 행정구역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1937년 이후 행정구역 코드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앞 시기 변경 행정구역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 단, 행정구역 코드 등은 별도로 미리 준비하여야 하므로 일종의 先통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② 後통제의 중요성

그런데 DB의 기능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정보를 先통제하려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동원지 또는 작업장의 경우, 동일 작업장이나 같은 계통 회사의 유사 작업장이라고 해도 표기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三菱 계열 작업장으로 동원된 명단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DB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각 작업장 중 三菱 계열 작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DB 구축 단계에서 작업장 이름을 보고 三菱 계열 여부를 판단하여 입력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작업도 힘들고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일단 DB가 만들어지면, 강제 동원된 작업장 데이터가 원문 표기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검색 시소러스 작업 등을 거치면 작업장 목록을 정비할 수 있고 보다 정밀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서 1번의 ‘DB 제작의 목적’에 맞게 DB의 기능 요건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데이터 後통제 작업 과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3. 확장

이제껏 말한 것은, 국가기록원 강제동원 명부 DB, 강동위 업무용 명부 DB를 정비·재조직하고 이후 확보된 명부 자료를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를 만드는 방향과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명부만으로 강제동원의 실상을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동원되었고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신뢰도 높고 잘 정비된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진상 관리시스템에 있는 강동위 자료입니다. 특히 피해 조사서와 심사서가 중요하겠지요. 아울러 강동위에서 제작한 구술기록 등도 강제동원의 실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명부 통합 DB를 바탕으로 이 같은 자료들이 연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재구성을 위해 위와 같은 정보와 자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 활용이라는 과제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히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1) 공개 문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진상 관리시스템의 피해조사서 등이 공개가 가능한가입니다. 개인 정보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강제동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인별 연결 문제

DB 연계·확장 과정에서 인별 연결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명부 상에 ‘홍길동’, ‘남양길동’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강동위 피해조사서에 홍길동 항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부 통합 DB와 강동위 피해·진상 관리시스템의 검색만으로도 ‘홍길동’ 또는 ‘남양길동’에 관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 인물별로 구분해 내고 특정한 ID를 부여하여 해당 ID 기반으로 DB의 여러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개인별 정보를 일관되게 DB 내에서 연계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매우 깔끔하고 우아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들어가는 노력과 성과 둘 사이의 비율이 어떨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정 인물 기준 데이터 연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DB 자체가 정확하면 연결 오류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DB 제공자, 즉 국가기록원이 보증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3) 명부류 이외 문서 아카이브 구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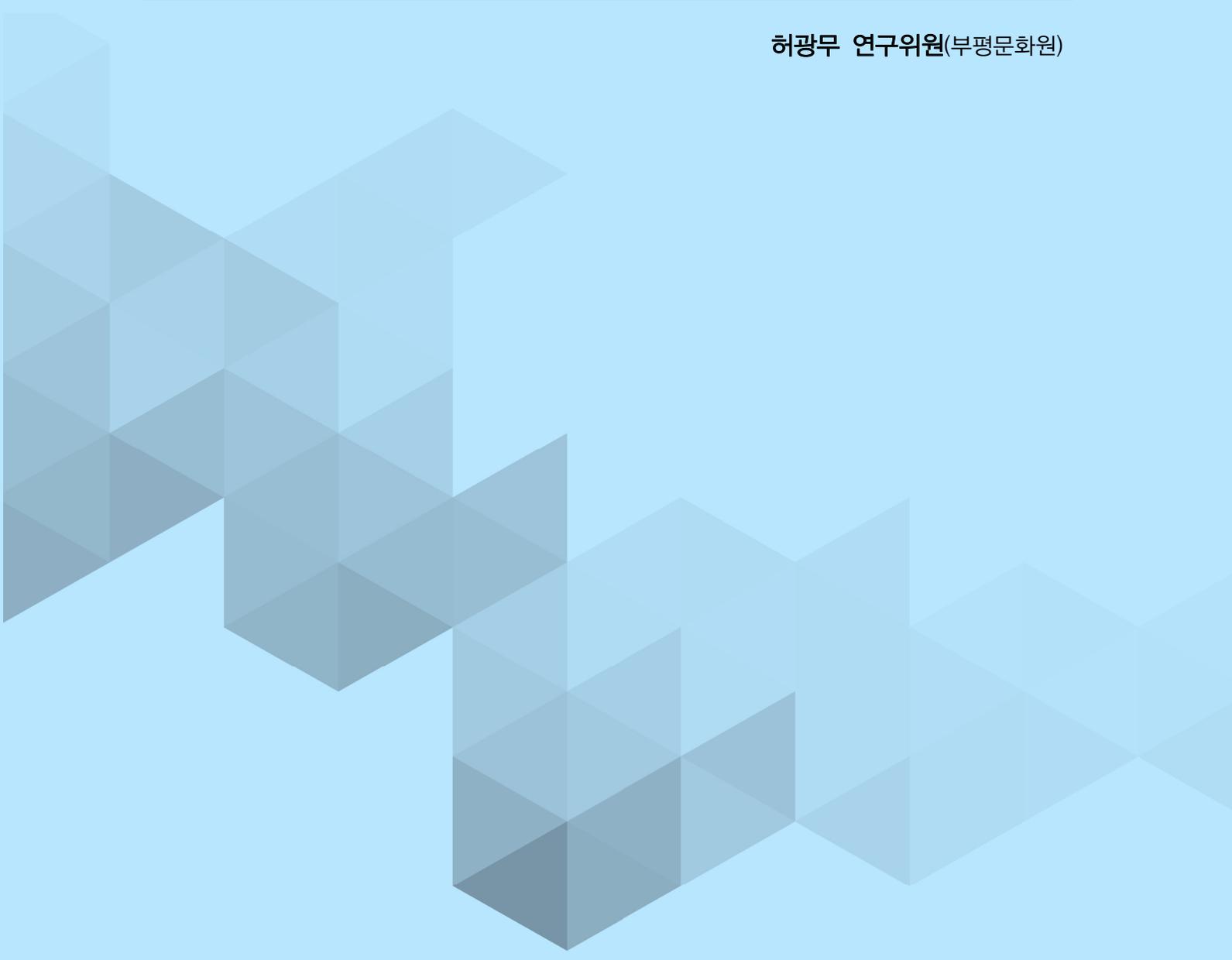
총독부 노무 문서 등 명부류 이외의 강제동원 관련 문서 아카이브를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동원의 정책, 집행 과정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정부, 조선총독부 등에서 생산한 정책, 통계 문서들이 필수적입니다. 판단이 잘 서지는 않습니
다만, 강제동원 관련 일제 측 문서류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들을 별도 아카이브로 구축할 경우 자료의 범위가 꽤 미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동원 아카이브’라면 일종의 주제 컬렉션, 주제 아카이브 형태가 될 것인데 자료의 범위, 정리의 방식, 정리의 체계 등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주도면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두서없는 의견이 강제동원 통합 DB를 만드는 사업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토론요지문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허광무 연구위원(부평문화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허 광 무(부평문화원)

1. 발제문의 의의

노영종 선생님의 [강제동원 기록 보유현황 및 DB 구축·활용 방안]의 발제는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그 내용에 대해 정리·소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방향, 구축항목,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총괄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금이라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오늘과 같은 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에 대해 기대감이 큼니다. 다만, 군인군무원, 노무자와 같이 분야가 다르거나 혹은 같은 노무자 분야라 하더라도 작성 목적이 다르면 생산된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다양성을 모두 수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남상구 선생님의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남상구)]의 발제는 강제동원 기록물(명부류)이 ① 연구자에게는 피해실태를 규명하는데 유효하고 ② 피해자 유족에게는 가족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에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부의 작성경위 등 해제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2. 추가적인 제언

두 분 발제자의 주장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를 생산,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보충적인 설명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시스템에 다양한 콘텐츠를

- ① 사진자료 : 고 김광열 선생님의 기증자료 중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이 어떤 곳에 어떻게 안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귀중한 내용을 수록한 사진자료가 상당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희생자 유골봉환에도 유용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상규명에도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지원을 담당했던 위원회가 피해확인을 위해 공개했던 사진자료도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었던 동행자 찾기코너가 그것인데, 수록된 사진들은 모두 단체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내에는 작업장과 송출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 ② 구술자료 : 위원회가 2005. 2.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파악한 생존자는 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면담을 통한 기초조사가 있었고 그중 다수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구술청취를 하였습니다. 체험자의 이야기는 명부와 명부와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명부의 행간을 채워주는 등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서자료와 체험자 증언이 함께 한다면 진상규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채록한 자료를 추가했으면 하고, 가능하다면 현재 생존자에 대한 구술채록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통합시스템과의 연계(기 시스템의 활용 및 보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등 각종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 도출된 결과자체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피해 진상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었기에 검색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사와 결정은 위로금 지급관리 시스템이란 것으로 관리했습니다. 두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검색 등 결과확인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금 지급관리 시스템에는 피해 진상관리 시스템에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사할린 한인 사망자의 기록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사할린 한인묘찾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묘비에 사망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가족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 진상 규명과 한인희생자의 국내 유골봉환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선결과제

통합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명부류의 자료 중에는 오타가 자주 발견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편철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서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료입력 시 정확도 제고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고, 또 명부해제를 통해 수록명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가령 [일제하피징용자명부]를 예로 들어 보면, 일본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일제하’라는 제명을 쓴 점이나, 또 성명을 영자로 표기한 명부도 있어 일본정부가 생산하여 편철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나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자료 확보의 경위는 물론이거니와 내용, 특징 등 각각의 명부에 대한 분석과 자료해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요지문 3

강제동원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와 연구방향

한혜인 연구원(성균관 대학교)

강제동원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와 연구방향

한 혜 인(성균관대학교)

1.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종류와 데이터 베이스 및 연구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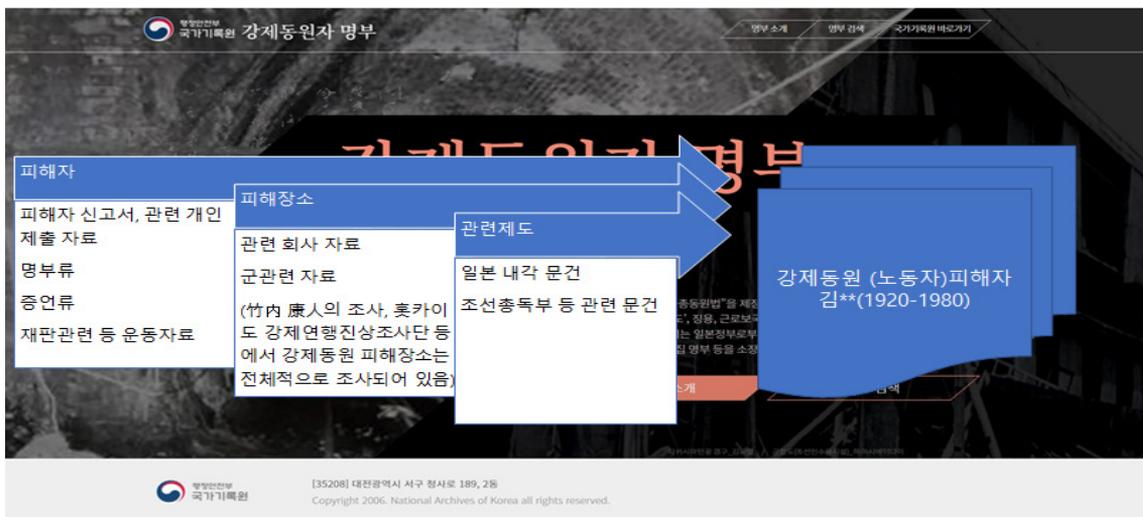
-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종류는

- ① 강제동원 정책 등에 관련한 공문서, 강제동원 기업서류
- ② 명부류
- ③ 피해자 증언 / 피해자 운동 / 피해자 재판 관련
- ④ 위원회 피해조사결과

로 나눌 수 있음. 이 4가지의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때, 피해 당사자 국가에서 피해자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피해자 중심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 난징대학살 기념관 피해자 폴더



2. 현황

- 명부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강제동원자명부」¹⁾ 사이트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부(461,555명), 우리 정부가 조사, 작성한 명부(537,077명), 조선총독부기록에 포함된 명부(1,012명), 기타 수집명부 중 중복분 제외(49,749명) 총 1,413,470명 분을 공개하고 있고, 차후 군인군속 공탁금명부(114,417명), 조선인포로명부(2,767명), 김광렬 기증(건강보험대장, 화장인허가 등 약 11만 명) 등의 공개를 예고하고 있음

- 관련 공문서 등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조선총독부 문서, 지방행정문서 등 행정문서, 김광렬 선생 기증자료, 이희팔 기증자료(사할린)에서 일부),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 수집(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박물관(구, 홋카이도개척기념관), 박경식 문고, 큐슈대 석탄박물관 소장자료 일부 등), 위원회 활동 시 수집자료 등, 일본에서 발굴되어 있던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한국 내 대부분 수집·소장되어 있음

3. 금후 과제

1) 강제동원 정책 등에 관련한 공문서 목록화 및 수집

- 국가기록원(조선총독부 문서, 지방행정문서 등)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 중 강제연행 관련 문서를 따로 목록화하여 제공
 - ※ 법령집과는 별도로 행정문서 별
- 일본제국 노무동원, 군동원 관련은 모두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제공(현재,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대부분 수집가능)
 - ※ 강제동원 즉, 전시 노무동원은 일본제국 정책이었음. 따라서 일본 정부(내각, 기획원, 내무성, 후생성 등)의 관련 사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필요

1) (<http://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viewMain.do>)

2) 강제동원 관련 기업관련 서류, 운동단체 서류 등을 강제동원자료로 특화하여 목록화하고 일괄 공개 필요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외자료 수집 사업에서 2000년대 초반 강제동원 관련 자료 체계적으로 수집.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박물관(구, 홋카이도개척기념관), 박경식 문고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잘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 자료와의 연동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록원 김광열 선생 기증자료와 재화태조선인회의 이희팔 회장(사할린 관련) 기증자료, 중소이산가족회 기증자료에서 공문서와 사문서, 명부류를 구분하여 목록화
- 위원회 활동 시 수집했던 1차 자료 확인
-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 지방문건 등 목록과 확인 필요

3) 명부류의 시기별, 종류별 분류 검토, 재입력 필요

- 현재 하고 있음. 명부류는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성 있음
- 명부류는 명부의 성격을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생산된 명부류(광부명부, 사망자명부, 1946년 이후 일본정부 조사 명부류, 피해자 단체 등이 만든 명부류)를 분류해 명부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1차 명부, 2차 명부로 나눌 필요 있음
- 우선적으로 노무자는 1946년 6월 17일부 근발제337호 「조선인노무자에 관한 조사 건」에 의해 작성된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16현분)(69,766명)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갔으면 좋겠음.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입력하여 기본 데이터로 했으면 좋겠음. 이 명부는 조사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름, 생년월일, 입소경로(모집, 관알선, 징용), 직종, 퇴사 이유, 연령, 출신지, 미불금, 퇴소시의 대우, 후생연금보험, 퇴직수당금지급여부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음
- 군인, 군속은 『유수명부』를 기본으로 해서 군인군속 동원체계와 정리를 해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회사 자료와 신문기사 등에서도 명부가 존재함. 이들도 순차적으로 입력 필요
예)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만자탄광 자료 중 명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The Archives of Korean History

만자탄광

검색 문자 입력기 상세검색

검색결과

검색어: 만자탄광

결과 내 검색

전체검색결과 3건

계층정보

사료군 1건
사료(하위)계열 1건
사료철 1건

국외

일본 3건

정확도 확인 조회건수: 3건

1 사료계열
北海道開拓記念館 소장 北炭 萬字炭鑛 자료
AJP038_01

2 사료철
萬字炭鑛 殉職者名簿
AJP038_01_00C0034

3 사료군
일본 北海道開拓記念館 소장 강제동원 관련 자료
AJP038

정렬 50 확인

1380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4)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필요

- 1950년대 후반부터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던 각 지역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을 비롯해 일본 내 활동가들에 의해 조사된 피해자 증언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음.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된 강제연행, 강제동원 관련 서적 및 보고서에서 피해자 증언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음

5) 한국 내 관련자료 확인 필요

- 한국정부 생산 명부류 중, 민간청구권보상 시 증거중심이였기 때문에 명부 뿐 아니라, 첨부 서류 등 확인할 필요 있음
- 미군정 문서에서 귀환/원호금지급 등 관련 자료 등 찾아볼 필요성 있음

MEMO

MEMO

MEM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